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양 육 비 이 행 확 보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차 '20.6.9. 공포, '21.6.10. 시행, 2차 '21.1.12. 공포, '21.7.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구성에 관계기관으로 경찰청 추가(안 제3조제1항 개정)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고시로 정하며 양육비 채권자의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자녀 명의 금융회사계좌로 긴급지원금 입금함(안 제8조제1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액 회수를 구상권 행사에서 국세채납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철회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마. 출국금지 요청·해제 요청 절차 및 방법(안 제17조의3 신설)

바. 명단공개 제외사유 및 기간(안 제17조의4 신설)

사. 고유식별번호의 처리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19조제12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세청”을 “국세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긴급지원 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1.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2.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제9조의 제목 “(긴급지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긴급지원 지급액에 대한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을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금액”으로, “이를”을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로, “통지”를 “통지를 하여야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경우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라목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구급차 등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7. 그 밖에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을 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정지처분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정지처분 철회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정지처분 철회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중 채무자가 해당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

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4(명단공개) ① 법 제21조의5제1항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
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양육비 이행능
력이 없는 경우

5.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
은 경우

6.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
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명단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일로부터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명단공개 후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

제19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철회 요청에 관한 사무
- 13.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 14.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u>국세청</u>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 ----- ----- ----- ----- <u>국세청, 경찰청</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양육비 채권자가 「 <u>한부모가족지원법</u> 」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 <u>한부모가족</u> <u>은</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긴급지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금액 납부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긴급지원 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1.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2.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제9조(긴급지원 지급액에 대한 징수) ① -----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금액-----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 통지를 하여야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 --.

<삭 제>

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신 설>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단
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승용자
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이용
하여 여객자동차 운전을 업으
로 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경우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운
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신 설>

5.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라목에 따른 긴급자동차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구급차 등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7. 그 밖에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을 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정지처분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정지처분 철회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정지처분 철회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중 채무자가 해당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

<신 설>

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
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
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
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4(명단공개) ① 법 제21
조의5제1항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
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
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
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
계획을 제출한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
무 전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4.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양육 비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5.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u>민법</u>」 제27조에 따라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6.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명단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일로부터 3년간 게 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명 단공개 후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에 서 제외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 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철회 요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2) 2100 - 6354